

융합제품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하는가?

오수교 관세사 KPMG 세정관세법인 고문



최근 국가나 기업의 신성장동력은 제품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상품가치와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융합(融合)이란 사전적 정의로 '둘 이상의 사물을 서로 섞거나 조화시켜 하나로 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융합제품은 동종제품을 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종제품을 합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를 컨버전스(convergence) 또는 퓨전(fusion)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융합제품은 품목분류가 어려우므로 많은 다툼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융합제품의 품목분류 방법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01. 서론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을 합하여 하나의 물품으로 된 융합제품이 관세율표에서 일견(一見) 둘 이상의 품목번호(Heading No로 이하 '호'라 한다)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원칙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한다. 이 통칙은 세 가지 분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목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특별한 원칙을 정한 경우란 다음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은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와 시계가 결합된 물품’ 및 ‘헤드폰과 마이크로폰이 결합한 물품’이 그에 해당 한다. 왜냐하면 해당 물품은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및 헤드폰으로 분류하도록 호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 2>의 시계 · 온도계와 지구의가 결합된 물품 및 시계와 나침반이 결합된 물품은 특별한 원칙이 없으므로 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한다.

통칙 제3호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의 사물을 둘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그림 3>의 사례를 통하여 이 통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자 한다. 중앙의 그림은 보는 사람의 관점이나 환경에 따라 매력적인 젊은 여성 또는 나이든 노파로 달리 볼 수 있다.^①

그런데 좌측 그림에서 적색 원형으로 표시한 부분을 귀와 턱이라고 간주할 때 매력적인 여성으로 다가온다. 반면에 반대로 우측 그림에서 적색 원형으로 표시한 부분을 눈과 코라고 하면 이때는 나이든 노파가 된다.

즉,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거나 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도 어떤 원칙과 조건을 부여하면 합의에 도달하거나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 융합제품의 분류규정을 특별히 규정한 경우



① 이 그림을 소개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박사는 그 책에서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림 2〉 융복합물품으로 통칙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1. 시계 · 온도계와 지구의	2. 시계와 나침반
 온도계(제9025호) 지구의(제4905호) 시계(제9102호)	 시계(제9102호) 나침판(제9014호)

〈그림 3〉 일견 하나의 사물이 둘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02. 통칙 제3호의 규정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통칙 제3호는 하나의 물품이 일견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될 수 있을 경우에 일정한 원칙과 조건을 정하여 하나의 호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품목분류의 대원칙은 이와 같은 융합제품이라도 실질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하나의 호에 일괄 분류함으로서 무역의 원활화와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통칙 제3호는 가목, 나목, 다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전문은 다음 <표 1>과 같다. 이 통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통칙 제1호^②를 우선해서 적용하기 때문이다.

<표 1> 통칙 제3호 전문

<p>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후로 본다.</p> <p>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p> <p>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p>

① 통칙 제3호가목

본 통칙의 핵심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the most specific description)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general description)된 호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분류하여야 할 물품에 관하여 어떤 호가 다른 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엄밀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나, 일반적으로 다음에 따라 정할 수가 있다.

② 통칙 제1호는 품목분류의 최우선 규정으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다. 앞의 그림1에 해당하는 두 제품은 호의 용어에 그렇게 분류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가. 품명은 종류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림 4>와 같이 전동기를 갖춘 면도기와 이발기는 제8510호로 분류되므로 손으로 작동하는 전동공구로 보아 제8467호로 분류하거나 또는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제8509호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진공청소기의 경우도 이와 같다.

<그림 4> 품명이 종류보다 구체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제품

대상제품	종류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손으로 작동하는 전동공구(제8467호)가정용 전기기기(제850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기면도기(제8510호)
	가정용 전기기기(제8509호)	진공청소기(제8508호)

나.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된 것이 구체적인 표현이다.

특정 물품의 어느 품명이 그 물품을 보다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 그 품명은 그 물품을 불완전하게 표시하고 있는 품명보다 더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림 5>와 같이 자동차용 터프트한 양탄자(제5703호)는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제8708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에 해당된다. 또 다른 예로는 틀에 끼우지 않은 안전유리로서 항공기용의 것은 항공기용 부분품(제8803호)보다 안전유리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제7007호로 분류한다.

〈그림 5〉 완전하거나 상세한 표현에 해당하는 제품

대상제품	일반적 표현	완전한 표현, 명백한 표현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제8708호)	터프트한 양탄자(제5703호)

② 통칙 제3호나목

이 통칙은 통칙 제3호가목(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분류)에 따라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가능한 한 이들 구성 재료나 구성요소 중에서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지닌 재료나 물질 또는 구성요소가 속한 호로 분류한다는 규정이다. 통칙 제3호에서 나목이 가장 중요하고 품목분류의 핵심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가. 적용대상물품

이 통칙을 적용하는 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

1) 혼합물

혼합물(mixtures)이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때 같은 상태(기체·액체·고체)끼리의 혼합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상태(예: 고체와 액체 또는 액체와 기체 등)의 혼합일 수도 있다.

2)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서로 다른 재료(materials)의 복합물(composite goods)은 표면과 표면이 붙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나, 표면에 도포되었거나 안에 삽입되었거나 일부를 박아 넣은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한다.

참고적으로 이 표의 분류원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내부(안)에 특정 재료를 두고 바깥층이나 겉면을 다른 재료로 완전히 싸게 되면 바깥층이나 겉면을 이루는 재료에 따라 분류하는 경향이 강하다.

3) 서로 다른 구성요소(components)로 구성된 복합물

이러한 복합물(composite goods)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되어 실제로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이들이 상호 적응되고 상호 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는 정상적인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③

이 조항의 복합물은 이 글의 주제인 ‘융합제품’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이와 같은 제품을 관세율표 제16부(제84류의 기계류와 제85류의 전기기기 등)와 제90류(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의료용기기 등)에서는 ‘복합기계 또는 다기능기계’라고도 하며, 이들 부나 류에서 이러한 제품을 분류하기 위하여 제16부 주 제3호와 제90류 주 제3호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③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소비자가 분리된 카메라만을 구매하지 않으며, 그런 상태로 사용하지도 않는다.

다음 <그림 6>의 ‘커피메이커(커피 끓이는 기기)’와 ‘오븐’은 모두 제8516호(가정용 전열기기)로 분류한다. 둘 이상의 구성요소로 된 두 물품 모두가 본질적인 특성(주된 기능)을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는 것은 같지만, 통칙 적용과 관련하여 커피메이커는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3호)를 적용한 것이고, 오븐은 통칙 제3호나목을 적용한 것이다.

그 이유는 관련 호의 용어나 주의 규정에 복합제품의 분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인데 커피메이커는 제16부 주 제3호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븐은 별도로 정한 호의 용어나 주의 규정은 없다. 참고적으로 오븐을 제16부 주 제3호만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가정용 가스레인지가 제16부가 아닌 제15부(제7321호)에 속하기 때문이다.

제16부 주 제3호를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예: 응축기와 증발기로 구성된 공기조절기는 제8415호로 분류한다)에 분류되면 제16부 주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즉, 공기조절기는 동력으로 구동되는 팬이나 송풍기(제8414호)에 공기제습장치(제8479호) 또는 냉각수코일이나 냉장기계를 구성하는 증발기(제8418호)로 구성된 복합기계이나 이는 공기조절기로 제8415호로 분류토록 호의 용어에 규정하고 있다.

<그림 6>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결합한 복합물(커피메이커와 오븐)



4)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

이 물품은 이 글의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나. 본질적인 특성의 결정 방법

이 통칙에는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해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본질적 특성을 간단히 정의할 논제는 아니지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나 구성요소가 융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제품이 된 경우에 어떤 재료나 구성요소가 그 제품을 대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제16부 주 제3호(제90류 주 제3호도 포함한다)에 따라 어느 기계에 주된 기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관세율표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이 통칙 규정을 준용하면 된다.

다.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한 사례

국제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위원회(HSC)에서 융합된 제품으로 통칙 제3호나 목을 적용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제품으로 분류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의 <그림 7>과 같다.

우선 갤럭시기어(또는 스마트워치)는 무선통신기기(제8517호)와 시계(제9102호) 중에서 무선통신기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8517호로 분류하였다. 물론 이 물품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융합되었지만 이들은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음으로 드론의 경우에는 헬리콥터(제8802호)와 디지털카메라(제8525호) 중에서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8525호로 분류하였는데, 비행보다는 촬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림 7〉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분류한 사례



같은 위원회에서 융합제품으로 제16부 주 제3호를 적용하여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분류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우선 갤럭시탭은 주된 기능이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 또는 셀룰러폰(제8517호)로 볼 것인지에 관한 사항으로 주된 기능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제8471호로 분류하였다. 다음의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수신기기(제8528호)보다는 셀룰러폰이 주된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517호로 분류하였다.

끝으로 이온정수기는 정수기와 이온화장치(정수된 물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하는 기기로 제8543호로 분류한다) 중에서 정수기에 주된 기능이 있으므로 제8421호로 분류하였다.

물론 이런 융합제품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규정이 형식상 구분되지만, 그 분류하는 방법이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 8〉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따라 분류한 사례

갤럭시탭(태블릿PC)	스마트폰	이온정수기

참고로 이 위원회의 운영 및 품목분류의 결정 방법은 각국의 대표가 참석하여 토론을 거친 후에 다수결로 결정한다. 드물게 전원일치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견이 나뉘진다.

사회현상의 다른 분야의 의사결정과정도 그러하지만, 품목분류도 본질적인 특성이나 주된 기능을 결정할 때에 의사결정 주체의 입장이나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그림 9〉의 비데①의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은 신체의 특수한 부위를 세척하기 위하여 물을 분사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므로 제8424호로 분류하지만, 유럽은 ‘물을 데워주고 더운 바람과 시트를 가열시키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보아 제8516호로 분류한다.

〈그림 9〉의 먼지제거기는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케이스와 손잡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3926호로 분류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체 가격 중에서 이들이 100분의 70 정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로 만든 셀프접착테이프(제481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왜냐하면 옷에 묻어 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실질적인 기능은 셀프접착테이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림 9〉 본질적인 특성이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따라 분류한 사례

먼지제거기	비데①	비데② ^④
		

결론적으로 기계나 전기기기와 같은 융합제품은 본질적인 특성이나 주된 기능을 결정할 때에 특히 구성요소의 성질이나 역할 또는 가격을 중시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통칙 제3호다목

이 통칙은 제3호가목과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을 때에 적용한다. 이 통칙을 적용할 때 동일(동등)하게 분류기능한 모든 호를 찾아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이 원칙은 당연히 제16부나 제90류에 속한 복합기계나 다기능기계에도 적용한다.

이 통칙은 품목분류의 과학적이나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품목분류의 정책(약속)이라고 여겨진다.^⑤

④ 관세율표에서 비데[bidet]란 플라스틱[제3922호]이나 도자[제6910호] 또는 스테인리스강[제7324호] 등으로 만든 물품을 말하며, 이들 물품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에 다른 기능을 융합시킬 때에 이를 융합제품이라 할 수 있는데, 만약 향수와 같은 화장품을 분무하는 기능이 추가된다면 이는 퓨전제품의 형식이 될 것이다.

⑤ 참고적으로 1976년 이전에 사용된 BTN(브뤼셀 품목분류표) 통칙 제3호다목은 '세율이 가장 높은 호로 분류한다.'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면 특정 물품에 대한 세율은 각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물품이라도 각각 다른 호로 분류될 수 있어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1976년 CCCN(관세협력이사회품목분류표)부터 현행 규정과 같이 통칙 제3호가목과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다면 동일하게 분류 기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토록 하였다. 통칙 제3호다목은 다른 통칙 규정과 달리 논리적 근거를 가진 것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다.

우측 <그림10>의 냉온수기는 우리나라의 분류사례로 냉수기(제8418호)와 온수기 중에서 어느 물품도 주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온수기(제8516호)로 분류하였다. 이 물품을 구성하는 요소의 가격만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냉수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할 것이지만, 실제 사용되는 역할이나 성질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그림 10> 냉온수기



03. 결론

융합제품의 품목분류 방법에 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비교적 쉽고 공감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다양한 유형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융합제품이 새롭게 개발되어 거래되는 실정에서 이러한 융합제품의 품목분류를 통칙 제3호나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이나 주된 기능을 조화롭게 결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또한 특정 국가의 품목분류 관행이나 무역환경에 따라 또는 납세의무자와 관세관청간에 얼마든지 다른 분류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 특히 품목분류의 결과로 관세율이나 원산지결정기준 등이 다른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은 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융합제품은 수출국과 수입국 또는 납세의무자와 관세관청 간에 이견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이 품목분류의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국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품목분류의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FTA를 적용하기 위한 품목분류의 권한은 수입국에 있으므로 그 수입국의 품목분류의 관행이나 사례를 잘 파악하는 것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관세청에서는 미국·EU·중국·일본 등 주요국가의 품목분류사례의 정보를 홈페이지(세계HS정보)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품목분류사례가 법적 기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끝으로 융합된 완제품뿐만 아니라 최근 산업계의 추세에 따라 모듈(module)화한 부분품의 품목분류도 다툼이 많다. 모듈(module)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완제품을 구성하는 부분조립품으로 여러 가지 부분품이 하나로 집약된 것으로 교환 가능한 구성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듈화한 부분품도 앞에서 언급한 통칙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모듈화한 부분품이 특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면 특정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에도 분류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 이 글에서 제시한 의견은 관세청이나 국제원산지정보원 또는 필자소속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